

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
구축에 관한 조례안
(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29호
- 나. 제 출 자 : 정순기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2. 9. 6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9. 6.

2. 제안이유

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 위기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 구축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라.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(안 제4조, 제5조)
- 마.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(안 제6조)
- 바.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및 협력(안 제7조, 제8조)
- 사.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정지원(안 제9조)

4. 관계법령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정신질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응급정신질환자로 인한 응급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및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만, 향후 지정 정신의료기관 역할과 기능, 소요예산 및 운영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.

※ 서울시 제정 자치구 : 4개구

- 강동구(2022.05.11.), 강북구(2022.04.22.), 강서구(2021.11.03.)
구로구(2022.04.28.)

붙임 : 관계 법령 1부

**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
지원에 관한 법률**

[시행 2022. 4. 8.] [법률 제17217호, 2020. 4. 7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, 정신질환을 예방·치료하며,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·조사와 지도·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, 사회복지시설,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,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4. 23.>